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

도급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한
다)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7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갑"이 요구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공사명 및 공사장소】

본 건 계약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사명과 공사장소(면적)는 아래와 같다.

공 사 명		
공사장소(면적)	(면적 :	m³)

제3조【공사기간】

① "갑"과 "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기간을 정하고, "을"은 아래 공사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착 공 일	년	월	일	
공사완료일	년	월	일	

②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의 추가공사 지시, "갑"의 아파트 입주예정일 지연 등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공사완료일은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필수 불가결하게 연장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당자자의 협의를 우선으로 한

다.

③ 제1항의 경우 외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공사완료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공사대금】

① "갑"은 "을"에게 본 계약과 관련하여 총 공사금액 [공사금액(한글)](\) 원정(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고, 구체 적인 지급일정에 대해서는 아래에 기재된 표와 같다.

대금 지급	홋	! 수	금 액	년	월	일	내	역
	0	1차	₩	/		/	선급	급
	0	2차	₩	/		/		
시급 시기	0	3차	₩	/		/		
	0	4차	₩	/		/		
	0	5차	₩	/		/	잔	금

② "갑"은 제1항의 공사대금을 약정된 지급일까지 지급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체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갑"이 위 약정기일에 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그 미지급액에 대하여 약정된 지급일 다음 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범위 및 공사내역】

- ① "을"은 "갑"에게 본 건 계약 체결 전에 기초도면과 공사내역서를 제시하고, "갑"과 "을"이 공사범위 및 공사내역에 대하여 미리 합의한 후본 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을"은 공사착수 전 "갑"에게 제1항에서 합의된 공사내역에 따른 구체적인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공사일정표 등)를 제출하여최종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 설계도서에 본 건 공사에 사용될 자재의 품질, 품명, 규격, 색상 등을 명확히 기재한 후 합의하여야 하고, "을"이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품질, 품명, 규격, 색상 등은 제2항에 따라 최종 승인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 ④ "갑"과 "을"의 개별적인 합의에 의하거나 "갑"이 승인한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재료가 품절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할 수 없는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해당 재료를 변경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의 합의 나 "갑"이 승인한 설계도서 등에 재료의 품질 등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에 의한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재료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하되, 당사자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6조 【공사의 변경 및 조정】

- ① "갑"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또는 공사가 완료된 후 "을"에게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요청할 경우 "을"은 이에 응할 수 있고, "갑"은 변경 및 조정에 따르는 추가경비를 "을"에게 지불하여야 한다.이 경우 공사 진행 과정에서 공사의 내용이 변경되어 공사대금이 증액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되는 공사대금을 정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 추가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 ② "을"은 "갑"에게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계약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서 공사내용 및 공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갑"은 "을"의 위와 같은 제의에 응할 수 있다. 단, 이 역우 공사내용 및 공법의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경우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라 추가되는 공사기간은 연장되고, ②항의 경우 필요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④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4조 제4항 전단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변경(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잔금 지급시 정산한다.

제7조【하자보수】

- ① "을"은 공사 완료 후 1년내에 발생한 시공상 하자에 대해 보수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갑"과 "을"은 하자보수를 위한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기간 후에 발생된 하자, "갑"의 부주의 또는 "갑"의 사용으로 인한 하자, 자연마모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을"은 하자보수책임 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 "갑"의 보수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유상으로 보수할 수 있다.

제8조【공사지체】

- ①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공사완료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을"은 "갑"에게 매 지체일당 공사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 ② 천재지변, 폭동, 전쟁, 정부의 규제 등 사회 통념상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기타 계약당사자 일방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을"은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당해사유의 종료 시까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갑"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 제2항의 사유에 의한 공사지연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즉시 본 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i)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시킬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 ii) "갑" 또는 "을"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 ②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 상대방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되, 그에 대한 시정이 되지 아 니한 경우 서면으로 본 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시킬 경우
 - 2. "갑" 또는 "을"이 제1항 외에 기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될 경우 책임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0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등 금지]

"을"은 본 계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 또는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공사 종료시 정산】

- ① 제8조 등에 따라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종료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을"이 이미 공사한 부분 기성 공사비 보다 과하게 지급된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③ 동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 지급 및 정산·반환은 제8조 제3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적용한다.

제12조【저작궈 보호】

이 계약과 관련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을"에게 귀속되며, "갑"은 "을"의 서면동의 없이 그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기타 사항】

- ① "갑"은 "을"이 당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건축허가 등 주무관청의 인허가, 민원해결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 ②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서를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③ 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 ① 각 당사자 및 그 계열회사는, 본 계약에 의하여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각 당사자의 의무이행에 따라, 다른 당사자들에 관한 비밀정보를 전달받거나 알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의 기간만료나 종료(해지 또는 해제의 경우를 포함한다) 전후를 불문하고, 다른 당사자들의 비밀정보에 관한비밀을 지켜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고용인이나 대리인 등 또는 그 계열회사의 고용인이나 대리인 등이 어떠한 형식에 의하든지 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지득하게 하거나 본계약의 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게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각 당사자는 그 고용인이나 대리인 등 또는 그 계열회사의 고용인이나 대리인 등이 전항에 위반하여 비밀정보를 타에 공개하거나 배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통지】

① 본 계약상에서의 모든 통지, 요청, 청구, 동의 또는 기타 의사표시는 당사자의 표시란에 명기된 당사자의 주소로, 당사자가 위 주소 이외에 달리 서면으로 지정한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동 주소로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다만, 당사자가 서면으로 팩시밀리번호를 신고한 경우에는 원본의 우송이 뒤따르는 전제로 팩시밀리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서면을 우송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서면이 등기 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된 후 **일 내에, 각 당사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택배송달 포함)에는 그 교부하는 때에, 팩시밀리로 보내는 경우에는 팩시밀리 영수확인을 수령하는 때에 그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6조【계약의 우선】

본 계약은 본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계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본 계약 체결 전에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특히,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과 부속하는 제반 합의들 간에 상치되는 조항이 있는 경우 본 계약이 타 협약에 우선한다.

제17조 【분쟁의 해결】

-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양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② 양 당사자가 전항에 따른 합의를 하지 못할 때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첨부서류

1. 법인인감증명서 각 1통

<<이하 서명 날인 페이지>>

양 당사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그 대표자로 하여금 또는 직접 이에 적법하게 서명날인하게 하였으며, 각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 . .

도급인(발주자) "갑"

상 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전 화 / FAX :

수급인(시공자) "을"

상 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전 화 / FAX :